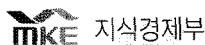


▶ 문의 :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(02-2110-5397)



녹색인증제 시행으로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

■ 녹색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통한 Best Performance 도모

개요

- 지식경제부 · 기획재정부 · 교육과학기술부 · 문화체육관광부 · 농림수산식품부 · 환경부 · 국토해양부 · 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'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

■ 녹색인증의 주요 내용

■ 녹색인증 개요

- ① 녹색기술 인증 :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(61개 중점분야) 유망기술
- ② 녹색사업 인증 : 9대 분야(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) 95개 사업
-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: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30% 이상

■ 녹색인증 혜택

- ① 녹색금융상품(민간투자자) 세제혜택('10.2.18)
- 유망녹색기술 · 프로젝트 사업화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

- ②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 · R&D · 수출 · 마케팅 등 지원강화
- (자금) 정책자금 융자, 기술평가보증 우대,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
 - (R&D등) 국가R&D 참여, 특허출원 우선심사,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
 - (수출 · 마케팅) 수출계약 손실보상, 해외전시회, 수출기업화 지원 등
- ※ 금년 5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



■ 인증수행 기관

- ① 전담기관(인증서 신청접수/발급)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
- ② 평가기관(지정 예정, 총 9개)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, 기술보증기금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전파진흥원

■ 인증서 신청/발급

- ① 접수 · 평가기간 : 수시 접수 및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
- ② 인증절차 : 평가기관(평가위원회)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서 발급
- ③ 발급명의 : 녹색기술 · 녹색사업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
- ④ 유효기간 : 인증일로부터 2년(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)
- ⑤ 수수료 : 녹색기술 100만원, 녹색사업 150만원(기업 확인은 무료)

■ 녹색인증 표시(마크)

- ① 녹색인증 마크의 의미 : 새싹, 자연으로 가는 길, 희망을 모티브(motif)로, 자연을 지키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밝은 미래를 형상화
- ② 형태 : 사용상 효능을 증대시키는 심볼(symbol) 마크



■ 관련규정

- ①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
- ② 녹색인증제 운영요령(10.4.14, 관계부처 합동고시)

추진현황 및 절차

- 녹색인증제는 '09년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 도입방안이 확정되었으며, 이후 공청회 ('09.10월) 및 관련업계·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됨
 - 특히, 3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기술분야 및 기술수준을 검토하고, 관계부처·유관기관 회의만 총 18차례 개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쳤음

-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,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적格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,
 - 민간투자자, 은행, 기업,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MB정부의 '녹색성장 비전'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"Best Performance"를 달성하고자 함
 - ※ 최고기술 대비 70% 수준의 정량적 기술규격 제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녹색분야 R&D 성과와 '녹색성장' 중장기 비전 간 가교역할 수행 기대

〈정량적 기술규격: 예시〉

중분류	소분류	핵심(요소)기술	기술수준
01. 태양광	01. 태양전지 제조용 소재 및 원료	실란계 가스	‣ SiCl4, SiHCl3, SiH4 순도 6N 이상
		폴리 실라콘	‣ FBR, Simens 7N 이상
		실라콘 잉곳	‣ 단결정 직경 160mm 이상, MLT 10μs 이상 ‣ 다결정 잉곳 700Kg 이상, MLT 3μs 이상
		실라콘 웨이퍼링	‣ 면적 156mm×156mm, 두께 200μm 이하, TTV 30μm 이하
		실라콘 쉬트	‣ EFG/Ribbon 두께 180μm 이하, MLT 1μs 이상
		금속전극	‣ 프린팅 금속 Ag, Al, Ag:Al, 도금 금속 Ni, Cu 여부
		EVA(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) 제조기술	‣ Vinyl Acetate(VA) content: 23% 이상 ‣ 투과도: 85%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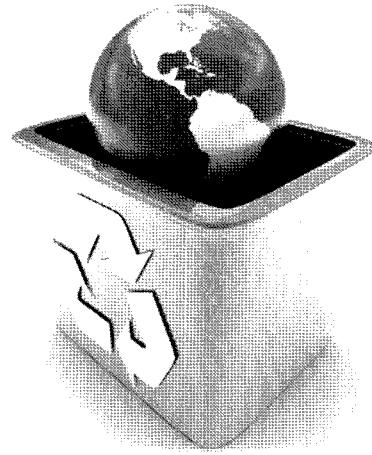
- 이와 관련, 금일 관계부처가 합동 고시한 「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」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 10대 분야*에 걸친 인증대상, 기술성·시장성·녹색성 등 인증기준 및 기술규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,
 - ※ 10대 분야: ①신재생에너지, ②탄소저감, ③첨단수자원, ④그린IT, ⑤그린차량, ⑥첨단그린주택도시, ⑦신소재, ⑧청정생산, ⑨친환경농식품, ⑩환경보호 및 보전

- 그간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기술개발 지원대상*을
‘인증(certification)’이라는 수요자지향적 정책수
단과 결합시켰음

※ 그린에너지(‘09.2월), 녹색기술중점육성(‘09.5월), 신성
장동력기술로드맵(‘09.5월) 등

- 이는 녹색성장을 촉진케 하는 녹색新기술의 지속
개발·확산 및 효율적 사업화*를 통해 新시장 창
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※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중 매출액 30% 기준으로 ‘녹색전
문기업’을 별도 확인



- 녹색기술 분야와 함께, 同 녹색기술의 활용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선정·고시된 녹색사업 분야는 예
너지 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,
-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同 분야의 기술개발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됨
- 한편, 沢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“신청자 편의 등 수요자지향적인 녹색인증제 운
영을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 발급 창구를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으로 단일화했으며”,
○ “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금지원, R&D, 수출, 마케팅 등 각종
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”이라고 밝힘
○ 이와 관련, 관계부처는 첫 녹색기술 인증 획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5월말까지 최종
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확정, 별도로 발표할 계획임을 알림
-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, 녹색 분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
원)에 신청(온라인 원칙)하면 됨
○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45일 이내에 모두 완료*되며, 신청인은 별도기관 방문 필요 없이
전담기관(☎02-6009-3981 ~ 3990)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
받게 됨
※ 단, 인증신청이 단시간에 과도하게 몰리는 등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원활한 인증평가업무 수행이 곤란할
경우에는, 1차에 한하여 최장 30일간 처리유예가 가능하도록 함